

(2024학년도 제3차)

규 정 심 의 위 원 회

○ 일시: 2024. 4. 18(목), 16:10 ~

○ 장소: 문화관 소통룸(402호)

○ 심의 안건

연번	안건	입안부서
1	대학원 학칙	교학팀
2	직제규정(연관규정)	
3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 추후 일정

기구명	일시
교무위원회 심의	- 2024. 4. 30.(화).
대학평의위원회 심의	- 미정(대학원 학칙 해당)
법인이사회 심의	- 미정(직제규정 해당)



우석대학교
WOOSUK UNIVERSITY

기획예산팀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대학원 학칙」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대학원 교학팀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회회	• 심의 해당		
입안사유 (추진배경)	• 신입생 확보를 위한 다양한 학제 필요성에 따라 학석사 및석·박사 통합과정, 연계과정 등의 새로운 학제 근거 마련하고자 함 • 수업연한 단축 내용을 고등교육법시행령 26조와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2. 석사학위과정: 1년 이내 3. 박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4.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2년 이내 5.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1년 6개월 이내 • 교과목 구분에 대한 대학원 학칙과 학사운영규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 학과 신설 및 모집중지 - 사회적경제·경영학과가 현재 일반대학원 박사과정만 설치되어 있어 석사과정을 신설 하되 경영문화대학원 석사과정의 사회적경제학과는 모집중지 하고자 함 - 에너지전기공학과는 현재 학부가 모집중지되어 대학원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소속 교수들의 정년 임박으로 수업 및 논문지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모집중지 하고자 함 • 학과 명칭 변경: 직업재활학과→재활학과 - 직업재활분야에 국한된 기존 교육으로는 재활 현장의 다양성 반영에 한계가 있고, 진로 및 취업분야가 제한적이어서 학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대학원위원회 심의(심의일: 2024.3.27.)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3조(학위 과정) 학석사 통합과정 및 학석사 연계과정의 학제 마련 • 제17조(등록금 반환 및 이월) - 등록금 반환 및 이월에서 수료자의 학위청구논문대체 수강료는 등록금이 아니므로 관련 사항 삭제 • 제24조(교과목 구분) - 학사운영규정과 동일한 적용을 위해 전공과목을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개정하고, 학과변경자의 학점인정에 따른 자유선택과목 삽입 • 제49조(대학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 대학원위원회 구성 내용 개정-대학원장의 발령사항을 적용하고, 대학원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변경 • 제4조(학과 편성 및 정원), 제39조(학위수여) - (전주)일반대학원 사회적경제·경영학과 석사과정 신설		

	- (전주)경영문화대학원 사회적경제학과 모집중지 - (진천)일반대학원 에너지전기공학과 석·박사과정 모집중지 - (전주)일반대학원 직업재활학과 명칭 변경: 직업재활학과→재활학과	
기대효과	• 업무 진행 시 규정 준수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 입안예고공청회 결과 ○ 일시: 2024. 4. 18.(목), 오전 10:00 ○ 장소: 문화관 소통룸(402호실) ○ 참석대상: 우석대학교 구성원(교직원, 학생, 조교) ○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 없음 □ 전자공청회 결과 ○ 게시시간: 2024. 4. 16.(화) ~ 4. 18.(목), 12:00(정오) 까지 ○ 게시방법: 교내 포털시스템 및 학교 홈페이지 ○ 의견수렴 결과: 의견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 (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 「대학원 학칙」 개정(안) 산·구조문대비표 1부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3조(학위 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두며, 석·박사학위과정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일반대학원에 2개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③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④<삭제 2021.7.6.> ⑤일반대학원 석사 특별과정과 박사 특별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제3조(학위 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u>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u>,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각 대학원은 학사학위과정과 각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한 학·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학과 편성 및 정원) ①각 대학원의 학과 및 학생정원은 <u>별표1</u>과 같다. (개정 2011.5.19, 2011.12.14, 2012.5.23, 2012.11.30, 2013.6.3, 2013.10.30, 2014.11.27, 2015.1.21., 2015.11.12., 2016.5.27., 2016.11.16., 2017.11.06., 2018.6.25., 2019.3.21., 2019.8.1., 2019.12.3., 2020.3.26., 2020.10.29., 2021.7.6., 2021.12.27., 2022.4.14., 2022.9.30., 2022.12.16., 2023.2.20., 2023.5.18., 2023.11.24.)	제4조(학과 편성 및 정원) ①각 대학원의 학과 및 학생정원은 <u>별표1</u>과 같다. (개정 2011.5.19, 2011.12.14, 2012.5.23, 2012.11.30, 2013.6.3, 2013.10.30, 2014.11.27, 2015.1.21., 2015.11.12., 2016.5.27., 2016.11.16., 2017.11.06., 2018.6.25., 2019.3.21., 2019.8.1., 2019.12.3., 2020.3.26., 2020.10.29., 2021.7.6., 2021.12.27., 2022.4.14., 2022.9.30., 2022.12.16., 2023.2.20., 2023.5.18., 2023.11.24., <u>2024.00.00.</u>)
제8조(수업연한) ①일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 4학기, 박사학위과정 4학기,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8학기로 한다. 다만, 전문간호사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5학기로 한다. ②특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5학기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u>석사·박사학위과정은 각각 6개월,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1년 이내에 수업연한을</u> 단축할 수 있다. (호신설) ④각 학위과정에 둘 수 있는 연구과정은 1년으로 한다. ⑤<삭제 2021.7.6.>	제8조(수업연한) ①일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 4학기, 박사학위과정 4학기,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8학기로 한다. 다만, 전문간호사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5학기로 한다. ②특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5학기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u>수업연한은 다음 각호와 같이</u> 단축할 수 있다. <u>1. 석사학위과정 : 1년 이내</u> <u>2. 박사학위과정 : 6개월 이내</u> <u>3.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2년 이내</u> <u>4.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 1년 6개월 이내</u> ④각 학위과정에 둘 수 있는 연구과정은 1년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⑥일반대학원 석사 특별과정과 박사 특별과정의 수업연한은 따로 정한다. <u>(항신설)</u>	⑤<삭제 2021.7.6.> ⑥일반대학원 석사 특별과정과 박사 특별과정의 수업연한은 따로 정한다. <u>⑦제3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하기 위하여 계절학기(여름, 겨울)를 정규학기로 운영할 수 있다.</u>
제17조(등록금 반환 및 이월) 등록금의 반환 및 이월에 관하여는 본교 학칙 제28조를 준용<u>하며</u>, <u>수료 후 학위청구논문대체신청 취소자의 경우 본교 학칙 별표2 등록금 반환 기준에 의한다.</u> 단, 교육대학원의 등록금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7조(등록금 반환 및 이월) 등록금의 반환 및 이월에 관하여는 본교 학칙 제28조를 준용<u>한다</u>. 단, 교육대학원의 등록금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24조(교과목 구분) ①일반대학원 및 경영문화대학원의 교과목은 <u>전공과목과 선수과목</u>으로 구분한다. 다만, 전문간호사 석사학위과정의 경우는 공통과목, 전공이론과목, 전공실습과목으로 한다. ②교육대학원의 교과목은 전공과목, 선수과목 및 교직과목으로 한다. ③국방정책대학원의 교과목은 <u>전공과목</u>으로 한다.	제24조(교과목 구분) ①일반대학원 및 경영문화대학원의 교과목은 <u>공통과목과 전공과목</u>, 선수과목, <u>자유선택과목</u>으로 구분한다. 다만, 전문간호사 석사학위과정의 경우는 공통과목, 전공이론과목, 전공실습과목으로 한다. ②교육대학원의 교과목은 전공과목, 선수과목 및 교직과목으로 한다. ③국방정책대학원의 교과목은 <u>공통과목과 전공과목</u>으로 한다
제39조(학위수여) ①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의 시험과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와 학위청구논문대체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해당학위를 수여한다. ②각 대학원의 석사·박사학위 종별은 <u>별표2</u>와 같으며, 학위의 수여는 학위기(별지서식 제1호 내지 제6호)로써 행한다. (개정 2008.6.5, 2010.3.3, 2011.5.19, 2011.12.14, 2012.5.23., 2012.11.30, 2013.6.3, 2013.10.30, 2014.11.27, 2015.1.21., 2015.11.12., 2016.5.27., 2016.11.16., 2017.11.6., 2018.6.25., 2019.12.3., 2020.3.26., 2020.10.29., 2021.7.6., 2022.4.14., 2022.9.30., 2022.12.16., 2023.2.20., 2023.5.18., 2023.8.30., 2023.11.24.) ③각 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대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학위수여) ①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의 시험과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와 학위청구논문대체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해당학위를 수여한다. ②각 대학원의 석사·박사학위 종별은 <u>별표2</u>와 같으며, 학위의 수여는 학위기(별지서식 제1호 내지 제6호)로써 행한다. (개정 2008.6.5, 2010.3.3, 2011.5.19, 2011.12.14, 2012.5.23., 2012.11.30, 2013.6.3, 2013.10.30, 2014.11.27, 2015.1.21., 2015.11.12., 2016.5.27., 2016.11.16., 2017.11.6., 2018.6.25., 2019.12.3., 2020.3.26., 2020.10.29., 2021.7.6., 2022.4.14., 2022.9.30., 2022.12.16., 2023.2.20., 2023.5.18., 2023.8.30., 2023.11.24., <u>2024.00.00.</u>) ③각 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대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대학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제49조(대학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현행	개정(안)
②대학원위원회는 <u>각 대학원장</u> 을 포함하여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u>7인 이상</u> 으로 구성하고, <u>일반대학원장</u> 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대학원위원회는 <u>대학원장</u> 을 포함하여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u>10인 이내</u> 로 구성하고, <u>대학원장</u> 을 위원장으로 한다.
(신설)	부칙 이 학칙은 2024년 월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학원별 학과 및 정원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 일반대학원

- 전주캠퍼스

계열	변경 전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변경 후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학과			학과																						
인문 사회	교	육	학	과	교	육	학	과																		
	아	동	복	지	학	과	아	동	복	지	학	과														
	특	수	교	육	학	과	특	수	교	육	학	과														
	국	제	비	즈	니	스	학	과	국	제	비	즈	니	스	학	과										
	심	리	운	동	학	과	심	리	운	동	학	과														
	교	육	및	문	화	콘	텐	츠	개	발	학	과	교	육	및	문	화	콘	텐	츠	개	발	학	과		
	심	리	학	과	심	리	학	과																		
	-	-	-	-	-	-	-	-																		
	(신설)	사	회	적	경	제	·	경	영	학	과	사	회	적	경	제	·	경	영	학	과					
	소	방	방	재	학	과	소	방	방	재	학	과														
	스	포	츠	복	지	교	육	학	과	스	포	츠	복	지	교	육	학	과								
	유	아	특	수	교	육	학	과	유	아	특	수	교	육	학	과										
	예	술	경	영	학	과	예	술	경	영	학	과														
	놀	이	심	리	재	활	학	과	놀	이	심	리	재	활	학	과										
	한	국	어	교	육	학	과	한	국	어	교	육	학	과												
	자연 과학	약	학	과	약	학	과																			
식		품	생	명	공	학	과	식	품	생	명	공	학	과												
한		약	학	과	한	약	학	과																		
간		호	학	과	간	호	학	과																		
간		호	학	과	(가	정	전	문	간	호	사)	간	호	학	과	(가	정	전	문	간	호	사)				
간		호	학	과	(감	염	관	리	전	문	간	호	사)	간	호	학	과	(감	염	관	리	전	문	간	호	사)
직		업	재	활	학	과	(명	칭	변	경)	재	활	학	과	직	업	재	활	학	과	(명	칭	변	경)		
작		업	치	료	학	과	작	업	치	료	학	과														
물		리	치	료	학	과	물	리	치	료	학	과														
공학	전	기	전	자	공	학	과	전	기	전	자	공	학	과												
	동	아	시	아	조	경	학	과	동	아	시	아	조	경	학	과										
	자	동	차	공	학	과	자	동	차	공	학	과														
	제	약	공	학	과	제	약	공	학	과																
	소	방	·	안	전	공	학	과	소	방	·	안	전	공	학	과										
	수	소	모	빌	리	티	공	학	과	수	소	모	빌	리	티	공	학	과								
의학	한	의	학	과	한	의	학	과																		
예체능	체	육	학	과	체	육	학	과																		
	스	포	츠	의	학	과	스	포	츠	의	학	과														
	태	권	도	학	과	태	권	도	학	과																
	스	포	츠	과	학	과	스	포	츠	과	학	과														
계	33개 학과		70명	34개 학과		70명																				

진천캠퍼스

계열	변경 전		변경 후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학과	입학정원	학과	입학정원
인문사회	경 영 학 과	15명	경 영 학 과	15명
자연과학	생 명 과 학 과		생 명 과 학 과	
공학	에 너 지 전 기 공 학 과 <삭제>		-	
	컴 퓨 터 공 학 과		컴 퓨 터 공 학 과	
	건 설 공 학 과		건 설 공 학 과	
	재 난 안 전 공 학 과		재 난 안 전 공 학 과	
계	6개 학과	15명	5개 학과	15명

3. 경영문화대학원
- 전주캠퍼스

변경 전		변경 후		입학정원
학	과	학	과	
-		-		23명
가 족 복 지 학 과		가 족 복 지 학 과		
다 문 화 학 과		다 문 화 학 과		
-		-		
미 용 경 영 학 과		미 용 경 영 학 과		
응 용 행 동 분 석 학 과		응 용 행 동 분 석 학 과		
관 광 경 영 학 과		관 광 경 영 학 과		
미 술 치 료 학 과		미 술 치 료 학 과		
-		-		
외 식 경 영 학 과		외 식 경 영 학 과		
사 회 적 경 제 학 과 <삭제>		-		23명
E S G 경 영 학 과		E S G 경 영 학 과		
9개 학과		8개 학과		23명

【별표 2】

학 위 종 별 (현행)

1. 일반대학원

계 열	학 과	학 위 종 별	
		석 사	박 사
인 문 사 회	국 어 국 문 학 과	-	문 학 박 사
	교 육 학 과	교 육 학 석 사	교 육 학 박 사
	아 동 복 지 학 과	문 학 석 사	문 학 박 사
	특 수 교 육 학 과	문 학 석 사	문 학 박 사
	국 제 비 즈 니 스 학 과	경 영 학 석 사	-
	유 아 특 수 교 육 학 과	교 육 학 석 사	-
	경 영 학 과	경 영 학 석 사	-
	심 리 운 동 학 과	심 리 운 동 학 석 사	심 리 운 동 학 박 사
	교 육 및 문 화 콘 텐 츠 개 발 학 과	문 학 석 사	문 학 박 사
		교 육 학 석 사	교 육 학 박 사
	심 리 학 과	심 리 학 석 사	
	글 로 벌 외 식 경 영 학 과	-	경 영 학 박 사 예 술 학 박 사
	관 광 경 영 학 과	-	관 광 경 영 학 박 사
	사 회 적 경 제 · 경 영 학 과	(신설)	사 회 적 경 제 학 박 사 경 영 학 박 사
	소 방 방 재 학 과	소 방 방 재 학 석 사	소 방 방 재 학 박 사
	스 포 츠 복 지 교 육 학 과	스 포 츠 복 지 교 육 학 석 사	스 포 츠 복 지 교 육 학 박 사
	국 제 교 육 문 화 학 과	-	교 육 학 박 사 문 학 박 사
	예 술 경 영 학 과	예 술 경 영 학 석 사	
	놀 이 심 리 재 활 학 과	놀 이 심 리 재 활 학 석 사	문 학 박 사
	한 국 어 교 육 학 과	문 학 석 사	-

계 열	학 과	학 위		종 별	
		석 사	박 사	박 사	박 사
자 연 과 학	약 학 과	약 학 석 사	약 학 박 사		
	생 명 과 학 과	이 학 석 사	-		
	식 품 생 명 공 학 과	이 학 석 사	이 학 박 사		
	한 약 학 과	한 약 학 석 사	한 약 학 박 사		
	간 호 학 과	간 호 학 석 사	간 호 학 박 사		
	간 호 학 과 (가 정 전 문 간 호 사)	간 호 학 석 사	-		
	간 호 학 과 (감 염 관 리 전 문 간 호 사)	간 호 학 석 사	-		
	직 업 재 활 학 과(명칭변경)	재 활 학 석 사	-		
	작 업 치 료 학 과	이 학 석 사	-		
	물 리 치 료 학 과	이 학 석 사	-		
공 학	전 기 전 자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에 너 지 전 기 공 학 과<삭제>	공 학 석 사<삭제>	공 학 박 사<삭제>		
	동 아 시 아 조 경 학 과	공 학 석 사	-		
	컴 퓨 터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건 설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조 경 건 설 공 학 과	-	공 학 박 사		
	자 동 차 공 학 과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제 약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제 약 · 화 장 품 공 학 과	-	공 학 박 사		
	재 난 안 전 공 학 과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소 방 · 안 전 공 학 과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수 소 모 빌 리 티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의 학	한 의 학 과	한 의 학 석 사	한 의 학 박 사		
예 체 능	체 육 학 과	체 육 학 석 사	체 육 학 박 사		
	국 악 과	음 악 학 석 사	음 악 학 박 사		
	스 포 츠 의 학 과	스 포 츠 의 학 석 사			
	태 권 도 학 과	체육학(태권도전공)석사	체 육 학 박 사		
	스 포 츠 과 학 과	스 포 츠 과 학 석 사	스 포 츠 과 학 박 사		

3. 경영문화대학원

학 과	학 위 종 별
행 정 학 과	행 정 학 석 사
유 통 물 류 학 과	경 영 학 석 사
미 술 치 료 학 과	미 술 학 석 사
한 국 어 지 도 학 과	문 학 석 사
관 광 경 영 학 과	관 광 경 영 학 석 사
가 족 복 지 학 과	사 회 복 지 학 석 사
다 문 화 학 과	다 문 화 학 석 사
건 축 도 시 조 경 부 동 산 학 과	부 동 산 학 석 사
외 식 경 영 학 과	경 영 학 석 사
미 용 경 영 학 과	미 용 경 영 학 석 사
<u>사 회 적 경 제 학 과 < 삭 제 ></u>	<u>사 회 적 경 제 학 석 사 < 삭 제 ></u>
상 담 심 리 학 과	심 리 학 석 사
응 용 행 동 분 석 학 과	심 리 학 석 사
E S G 경 영 학 과	경 영 학 석 사

학 위 종 별 (개정(안))

1. 일반대학원

계 열	학 과	학 위 종 별	
		석 사	박 사
인 문 사 회	국 어 국 문 학 과	-	문 학 박 사
	교 육 학 과	교 육 학 석 사	교 육 학 박 사
	아 동 복 지 학 과	문 학 석 사	문 학 박 사
	특 수 교 육 학 과	문 학 석 사	문 학 박 사
	국 제 비 즈 니 스 학 과	경 영 학 석 사	-
	유 아 특 수 교 육 학 과	교 육 학 석 사	-
	경 영 학 과	경 영 학 석 사	-
	심 리 운 동 학 과	심 리 운 동 학 석 사	심 리 운 동 학 박 사
	교 육 및 문 화 콘 텐 츠 개 발 학 과	문 학 석 사	문 학 박 사
		교 육 학 석 사	교 육 학 박 사
	심 리 학 과	심 리 학 석 사	
	글 로 벌 외 식 경 영 학 과	-	경 영 학 박 사 예 술 학 박 사
	관 광 경 영 학 과	-	관 광 경 영 학 박 사
	사 회 적 경 제 · 경 영 학 과	<u>사 회 적 경 제 학 석 사</u> <u>경 영 학 석 사</u>	사 회 적 경 제 학 박 사 경 영 학 박 사
	소 방 방 재 학 과	소 방 방 재 학 석 사	소 방 방 재 학 박 사
	스 포 츠 복 지 교 육 학 과	스 포 츠 복 지 교 육 학 석 사	스 포 츠 복 지 교 육 학 박 사
	국 제 교 육 문 화 학 과	-	교 육 학 박 사 문 학 박 사
	예 술 경 영 학 과	예 술 경 영 학 석 사	
	놀 이 심 리 재 활 학 과	놀 이 심 리 재 활 학 석 사	문 학 박 사
	한 국 어 교 육 학 과	문 학 석 사	-

계 열	학 과	학 위		종 별	
		석 사		박 사	
자 연 과 학	약 학 과	약 학 석 사		약 학 박 사	
	생 명 과 학 과	이 학 석 사		-	
	식 품 생 명 공 학 과	이 학 석 사		이 학 박 사	
	한 약 학 과	한 약 학 석 사		한 약 학 박 사	
	간 호 학 과	간 호 학 석 사		간 호 학 박 사	
	간 호 학 과 (가 정 전 문 간 호 사)	간 호 학 석 사		-	
	간 호 학 과 (감 염 관 리 전 문 간 호 사)	간 호 학 석 사		-	
	재 활 학 과	재 활 학 석 사		-	
	작 업 치 료 학 과	이 학 석 사		-	
	물 리 치 료 학 과	이 학 석 사		-	
공 학	전 기 전 자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동 아 시 아 조 경 학 과	공 학 석 사		-	
	컴 퓨 터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건 설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조 경 건 설 공 학 과	-		공 학 박 사	
	자 동 차 공 학 과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제 약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제 약 · 화 장 품 공 학 과	-		공 학 박 사	
	재 난 안 전 공 학 과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소 방 · 안 전 공 학 과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수 소 모 뱌 리 티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의 학	한 의 학 과	한 의 학 석 사		한 의 학 박 사	
예 체 능	체 육 학 과	체 육 학 석 사		체 육 학 박 사	
	국 악 과	음 악 학 석 사		음 악 학 박 사	
	스 포 츠 의 학 과	스 포 츠 의 학 석 사			
	태 권 도 학 과	체육학(태권도전공)석사		체 육 학 박 사	
	스 포 츠 과 학 과	스 포 츠 과 학 석 사		스 포 츠 과 학 박 사	

3. 경영문화대학원

학 과	학 위 종 별
행 정 학 과	행 정 학 석 사
유 통 물 류 학 과	경 영 학 석 사
미 술 치 료 학 과	미 술 학 석 사
한 국 어 지 도 학 과	문 학 석 사
관 광 경 영 학 과	관 광 경 영 학 석 사
가 족 복 지 학 과	사 회 복 지 학 석 사
다 문 화 학 과	다 문 화 학 석 사
건 축 도 시 조 경 부 동 산 학 과	부 동 산 학 석 사
외 식 경 영 학 과	경 영 학 석 사
미 용 경 영 학 과	미 용 경 영 학 석 사
상 담 심 리 학 과	심 리 학 석 사
응 용 행 동 분 석 학 과	심 리 학 석 사
E S G 경 영 학 과	경 영 학 석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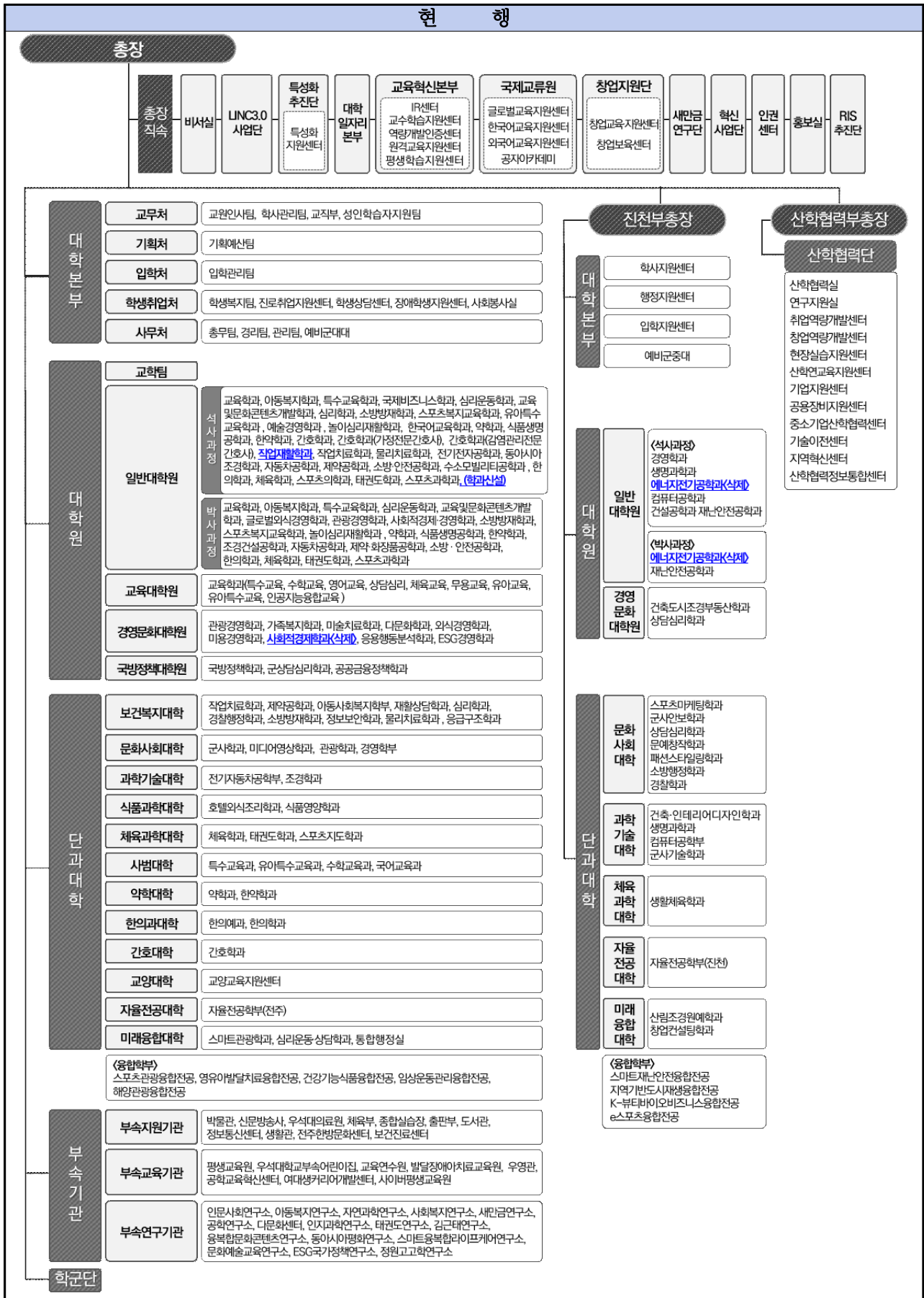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직제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대학원 교학팀	관련부서	기획예산팀
부서간 협의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1. 일반대학원 사회적경제·경영학과 신설(석사과정) - 사회적경제와 경영학을 융합하여 사회적경제 원칙을 경영전략에 통합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박사과정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도움이 되고자 함 2. 모집중지 - 일반대학원 에너지전기공학과 모집중지(석·박사과정) 현재 학부가 모집중지되어 대학원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소속 교수들의 정년 임박으로 수업 및 논문지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모집중지 하고자 함 - 경영문화대학원 사회적경제학과 모집중지(석사과정)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신설되는 사회적경제·경영학과와 중복되어 해당 과정을 모집중지하여 일반대학원 과정에 좀더 집중하고자 함 3. 일반대학원 직업재활학과를 재활학과로 명칭 변경(석사과정) - 직업재활분야에 국한된 기존 교육으로는 재활 현장의 다양성 반영에 한계가 있고, 진로 및 취업분야가 제한적이어서 학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대학원위원회 심의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36조(기구표)의 별표 내용 개정		
기대효과	• 대학원 신입생 충원을 제고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 입안예고공청회 결과 ○ 일시: 2024. 4. 18.(목), 오전 10:00 ○ 장소: 문화관 소통룸(402호실) ○ 참석대상: 우석대학교 구성원(교직원, 학생, 조교) ○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 (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 전자공청회 결과 ○ 게시시간: 2024. 4. 16.(화) ~ 4. 18.(목), 12:00(정오) 까지 ○ 게시방법: 교내 포털시스템 및 학교 홈페이지 ○ 의견수렴 결과: 의견 없음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직제규정」 개정(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36조(기구표) 본교의 기구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2.6., 2019.3.7., 2019.7.4., 2019.7.29., 2020.1.16., 2020.2.27., 2020.9.11., 2020.11.4., 2020.11.26., 2021.1.27., 2022.2.8., 2023.6.8., 2023.7.27., 2023.10.26., 2023.12.29., 2024.2.15.)	제36조(기구표) 본교의 기구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2.6., 2019.3.7., 2019.7.4., 2019.7.29., 2020.1.16., 2020.2.27., 2020.9.11., 2020.11.4., 2020.11.26., 2021.1.27., 2022.2.8., 2023.6.8., 2023.7.27., 2023.10.26., 2023.12.29., 2024.2.15., 2024.00.00.)
(신설)	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 (2024. . .)) 이 규정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기구표)

현행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기구표)

개 정(안)

개 정(안)

총장

총장 직속	비서실	LINC3.0 사업단	특성화 추진단 특성화 지원센터	대학 일자리 본부	교육혁신본부 IR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역량개발인증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평생학습지원센터	국제교류원 글로벌교육지원센터 한국어교육지원센터 외국어교육지원센터 공자아카데미	창업지원단 창업교육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새만금 연구단	혁신 사업단	안전 센터	홍보실	RIS 추진단
-------	-----	-------------	---------------------	-----------	--	--	-----------------------------	---------	--------	-------	-----	---------

대학 본부

교무처	교원인사팀, 학사관리팀, 교직부, 성인학습자지원팀
기획처	기획예산팀
입학처	입학관리팀
학생취업처	학생복지팀, 진로취업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사회봉사실
사무처	총무팀, 경리팀, 관리팀, 예비군대대

대학원

교학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교육학과, 아동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국제비즈니스학과, 심리운동학과, 교육 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심리학과, 소방방재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유아특수교육학과, 예술경영학과, 놀이심리재활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약학과, 식품생명공학과, 한약학과, 간호학과, 간호학과(정전문간호사), 간호학과(감염관리전문간호사), 재활학과 , 작업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전기전자공학과, 동아시아조경학과, 자동차공학과, 제약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수소모빌리티공학과, 한의학과, 체육학과, 스포츠의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과학과, 사회적경제경영학과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교육학과, 아동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심리운동학과, 교육 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글로벌의식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사회적경제·경영학과, 소방방재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놀이심리재활학과, 약학과, 식품생명공학과, 한약학과, 조경건설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제약 화장품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한의학과,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과학과
교육대학원	교육학과(특수교육, 수학교육, 영어교육, 상담심리, 체육교육, 무용교육,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 인공지능융합교육)
경영문화대학원	관광경영학과, 가족복지학과, 미술치료학과, 다문화학과, 외식경영학과, 미용경영학과, 응용행동분석학과, ESG경영학과
국방정책대학원	국방정책학과, 군상담심리학과, 공공금융정책학과

단과 대학

보건복지대학	작업치료학과, 제약공학과, 아동사회복지학부, 재활상담학과, 심리학과, 경찰행정학과, 소방방재학과, 정보보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문화사회대학	군사학과, 미디어영상학과, 관광학과, 경영학부
과학기술대학	전기자동차공학부, 조경학과
식품과학대학	호텔외식조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체육과학대학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수학교육과, 국어교육과
약학대학	약학과, 한약학과
한의과대학	한의예과, 한의학과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양대학	교양교육지원센터
자율전공대학	자율전공학부(전주)
미래융합대학	스마트관광학과, 심리운동 상담학과, 통합행정실

〈융합학부〉
스포츠관광융합전공, 영유아발달치료융합전공, 건강기능식품융합전공, 임상운동관리융합전공, 해양관광융합전공

부속 기관

부속지원기관	박물관, 신문방송사, 우석대의료원, 체육부, 종합심상진, 출판부, 도서관, 정보통신센터, 생활관, 전주한방문화센터, 보건진료센터
부속교육기관	평생교육원, 우석대학교부속어린이집, 교육연수원, 발달장애아치료교육원, 우영관, 공학교육혁신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사이버평생교육원
부속연구기관	인문사회연구소, 아동복지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새만금연구소, 공학연구소, 다문화센터, 인지과학연구소, 태권도연구소, 김군태연구소, 융복합문화콘텐츠연구소, 동아시아평화연구소, 스마트융복합라이프케어연구소, 문화예술교육연구소, ESG국가정책연구소, 정원고고학연구소

학군단

진천부총장

학사지원센터
행정지원센터
입학지원센터
예비군중대

대학원

일반 대학원	〈석사과정〉 경영학과, 생명과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설공학과, 재난안전공학과
	〈석사과정〉 재난안전공학과
경영 문화 대학원	건축도시조경부동산학과, 상담심리학과

단과 대학

문화 사회 대학	스포츠마케팅학과, 군사안보학과, 상담심리학과, 문예창작학과, 패션스타일링학과, 소방행정학과, 경찰학과
과학 기술 대학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생명과학과, 컴퓨터공학부, 군사기술학과
체육 과학 대학	생활체육학과
자율 전공 대학	자율전공학부(전주)
미래 융합 대학	산림조경원예학과, 창업인식실용학과

〈융합학부〉
스마트재난안전융합전공, 지역기반도시재생융합전공, K-뷰티바이오비즈니스융합전공, e스포츠융합전공

산학협력부총장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실
연구지원실
취업역량개발센터
창업역량개발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산학연교육지원센터
기업지원센터
공용장비지원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기술이전센터
지역혁신센터
산학협력정보통합센터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대학원 교학팀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행정업무 진행과정에서 적용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여 규정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 학과 및 전공변경자에 대한 학점인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교과목별 이수시기 및 논문지도 인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업무진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논문심사위원 위촉시 고등교육법시행령 44조를 적용하여 시행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 학위논문의 심사는 제24조에 따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이 실시한다. 이 경우 학위과정별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수와 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관련근거 (관계법령)	• 대학원위원회 심의(심의일: 2024.3.27.)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2조(지원서류)박사학위과정 지원자의 제출 서류 중 해당 서류 삭제 • 제13조(학과, 전공변경), 제39조(전공변경자의 학점 인정) <조삭제> - 해당 조의 내용은 모든 대학원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13조로 이동하여 인정 학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제17조(휴학자의 등록), 제29조(강사위촉) - 규정과 현행업무처리의 일원화-등록기간 이후 제적처리 전 휴학 시 실제로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이 처리되는 점과 강사위촉은 교원인사팀에서 진행하므로 해당 조항 삭제 • 제30조(수업계획서) 수업계획서 입력 시기를 학부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개정 • 제32조(과정별 이수학점), 제32조의 2(선수과목), 제35조(선수과목), 제37조(공통필수과목 이수시기), 제42조(공통필수과목 이수시기) - 과정별 교과목 이수학점의 이수시기를 수업연한 내로 완화하여 개정 • 제68조의2(학위청구논문대체) - 수료자의 학위청구논문대체 수강료는 등록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 개정 - 학위청구논문대체 수강자는 학점 이수만 하도록 일원화 하기 위해 일반대학원의 단서조항 삭제 • 제70조(학위청구논문지도교수 변경) - 논문지도교수변경 시 학생의 요청에 의한 경우 추가 • 제71조(학위청구논문지도 인원) <조삭제> 학위청구논문지도 인원의 제한 삭제 - 박사과정 외국인 학생 증가 및 교수들의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규정에 정한 기준을 준수할 수 없어 제한을 없애고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제74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단서신설 : 단, 특수대학원은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제79조(심사위원의 확정 및 심사위촉) 대학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심사위원 위촉을 고등교육법시행령 44조를 적용하여 개정 • 제102조(교내장학금) 직장인 장학금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개정		
기대효과	• 업무 진행 시 규정 준수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조(지원서류)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입학할 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나.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다.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라. 학업계획서(소정양식) 마. <삭제 2014.10.29.> 바. 기타 입시요강에서 명시한 서류 2. 박사학위과정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나. 대학 졸업증명서 및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다. 대학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라. 학업계획서(소정양식) <u>마. 연구실적조서(소정양식) 및 연구실적물</u> 바. <삭제 2017.6.15.> 사. 기타 입시요강에서 명시한 서류	제2조(지원서류)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입학할 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나.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다.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라. 학업계획서(소정양식) 마. <삭제 2014.10.29.> 바. 기타 입시요강에서 명시한 서류 2. 박사학위과정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나. 대학 졸업증명서 및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다. 대학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라. 학업계획서(소정양식) <u>마. <삭제></u> 바. <삭제 2017.6.15.> 사. 기타 입시요강에서 명시한 서류
제12조(학점등록)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 내에 졸업학점을 취득하지 <u>못하거나 수료 후 학위청구 논문대체신청 등의 사유로 인해</u> 추가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학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학점등록)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 내에 졸업학점을 취득하지 <u>못하여</u> 추가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학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학과, 전공변경) ①학과, 전공의 변경은 1회에 한하여 3차 학기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학과,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원학과(전공)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학과(전공) 변경신청서를 기간 내에 교학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u>(항 신설)</u>	제13조(학과, 전공변경) ①학과, 전공의 변경은 1회에 한하여 3차 학기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학과,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원학과(전공)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학과(전공) 변경신청서를 기간 내에 교학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u>③학과, 전공변경자의 변경 이전 취득 학점은 변경 학과 교수회의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다.</u> <u>④전항의 경우에 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u>
제17조(휴학자의 등록) 등록기간 내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수 있으나, 등록기간 이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할 수 있다.	제17조(휴학자의 등록) <조삭제>
제29조(강사위촉)교육과정 운영상 강사를 위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공(학과) 주임교수는 매 학기 개강 2주일 전까지 강사추천서를 교학팀	제29조(강사위촉) <조삭제>

현행	개정(안)
<u>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제30조(수업계획서)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를 매 학기 시작 <u>2</u> 주일 전까지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제30조(수업계획서)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를 매 학기 시작 <u>1</u> 주일 전까지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제32조(과정별 이수학점) ①일반대학원의 경우에는 해당학과의 공통필수과목 3학점을 포함하여 석사는 전공과목 24학점, 박사는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공통필수과목은 <u>3차 학기까지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u>	제32조(과정별 이수학점) ①일반대학원의 경우에는 해당학과의 공통필수과목 3학점을 포함하여 석사는 전공과목 24학점, 박사는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공통필수과목은 <u>수업연한 내에 이수하여야 한다.</u>
제32조의 2(선수과목) ①학부전공과 상이한 석사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석사학위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선수과목 9학점 이상을 학부전공 교과목에서 별도로 이수할 수 있다. ②석사학위과정의 전공과 상이한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선수과목 9학점 이상을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에서 별도로 이수할 수 있다. ③선수과목은 <u>3차 학기까지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u> ④<삭제 2011.9.5.> ⑤선수과목은 당해 학기 학부 및 석사학위과정에 개설된 과목 중에서 학과주임교수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다. ⑥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의 학기당 취득가능학점은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15학점으로 한다. ⑦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는 선수과목 이수계획표를 수강신청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 2(선수과목) ①학부전공과 상이한 석사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석사학위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선수과목 9학점 이상을 학부전공 교과목에서 별도로 이수할 수 있다. ②석사학위과정의 전공과 상이한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선수과목 9학점 이상을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에서 별도로 이수할 수 있다. ③선수과목은 <u>수업연한 내에 이수하여야 한다.</u> ④<삭제 2011.9.5.> ⑤선수과목은 당해 학기 학부 및 석사학위과정에 개설된 과목 중에서 학과주임교수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다. ⑥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의 학기당 취득가능학점은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15학점으로 한다. ⑦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는 선수과목 이수계획표를 수강신청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선수과목) ①<삭제 2016.11.16.> ②교원자격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제34조 제1항의 학점과는 별도로 교직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교직과목에 대한 선수과목의 이수는 석사학위과정 수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당 4학점, 총 20학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④선수과목 이수자는 학기당 이수 학점을 포함	제35조(선수과목) ①<삭제 2016.11.16.> ②교원자격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제34조 제1항의 학점과는 별도로 교직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교직과목에 대한 선수과목의 이수는 석사학위과정 수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당 4학점, 총 20학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④선수과목 이수자는 학기당 이수 학점을 포함

현행	개정(안)
하여 <u>10학점</u> 까지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선수과목의 이수학점은 본 대학원 학칙 제26조제2항의 이수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하여 <u>12학점</u> 까지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선수과목의 이수학점은 본 대학원 학칙 제26조제2항의 이수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7조(공통필수과목 이수시기) 공통필수과목은 <u>4차 학기까지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u>	제37조(공통필수과목 이수시기) 공통필수과목은 <u>수업연한 내에 이수하여야 한다.</u>
제39조(전공변경자의 학점 인정) 전공변경자의 경우 전공변경전의 이수학점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새 전공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9조(전공변경자의 학점 인정) <조삭제>
제42조(공통필수과목 이수시기) 공통필수과목은 <u>4차 학기까지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u>	제42조(공통필수과목 이수시기) 공통필수과목은 <u>수업연한 내에 이수하여야 한다.</u>
제47조(정기시험) 각 과목에 대한 정기시험은 매 학기말에 <u>실시한다.</u>	제47조(정기시험) 각 과목에 대한 정기시험은 매 학기말에 <u>실시하되, 수업계획서에 제시한대로 시험 종류를 달리할 수 있다.</u>
제48조(성적평가) 성적평가는 교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u>강의계획서</u> 에 제시된 평가방법에 따라 한다.	제48조(성적평가) 성적평가는 교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u>수업계획서</u> 에 제시된 평가방법에 따라 한다.
제68조의2(학위청구논문대체) ①재학생 및 수료자 중 학위청구논문대체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공(학과) 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 학위청구논문대체신청서를 교학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료 후 학위청구논문대체신청자가 등록을 취소하면 재신청을 불허한다. ②학위청구논문대체신청자는 추가수강에 따른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단, 수업연한 이후 학점등록의 <u>경우는 예외로 한다.</u> ③각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학위청구논문대체는 대학원 학칙 제26조제4항의 학점이수로 인정한다. <u>다만, 일반대학원의 경우에는 연구보고서(또는 작품발표 결과)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u> ④각 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대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8조의2(학위청구논문대체) ①재학생 및 수료자 중 학위청구논문대체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공(학과) 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 학위청구논문대체신청서를 교학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료 후 학위청구논문대체신청자가 등록을 취소하면 재신청을 불허한다. ②학위청구논문대체신청자는 추가수강에 따른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단, 수업연한 이후에는 학점등록 <u>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u> ③각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학위청구논문대체는 대학원 학칙 제26조제4항의 학점이수로 인정한다. <단서삭제> ④각 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대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0조(학위청구논문지도교수 변경) 학위청구논문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지도교수가 질병, 외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70조(학위청구논문지도교수 변경) ①학위청구논문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지도교수가 질병, 외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

현행	개정(안)
학위청구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학생은 지도교수와 전공(학과) 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 소정의 학위청구논문지도교수변경신청원을 교학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 신설)	로 학위청구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학생은 지도교수와 전공(학과) 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 소정의 학위청구논문지도교수변경신청원을 교학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u>②①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변경을 원하나 지도교수가 불허한 경우에는 지도교수변경원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u>
<u>제71조(학위청구논문지도 인원) 일반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지도인원은 교수 1인당 매 학기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합하여 10인 이내로 하되, 박사학위과정은 4인을 초과하여 학위청구논문지도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	<u>제71조(학위청구논문지도 인원) <조삭제></u>
<u>제74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①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u> 1.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취득 예정자 포함) 2.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u>단서 신설</u>) 4.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1학기 이상 학위청구논문지도를 받고 있는 자 5. <삭제 2012.5.14.> 6. <삭제 2014.10.29.> 7. 소정의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u>②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u> 1.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취득 예정자 포함) 2.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u>2학기</u> 이상 논문 지도를 받고 있는 자 5. <삭제 2012.5.14.> 6. 입학 후 전국 규모 이상의 학술지에 100%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 7. <삭제 2014.10.29.> 8. 소정의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u>제74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①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u> 1.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취득 예정자 포함) 2.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u>단, 특수대학원은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u>) 4.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1학기 이상 학위청구논문지도를 받고 있는 자 5. <삭제 2012.5.14.> 6. <삭제 2014.10.29.> 7. 소정의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u>②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u> 1.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취득 예정자 포함) 2.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u>1학기</u> 이상 논문 지도를 받고 있는 자 5. <삭제 2012.5.14.> 6. 입학 후 전국 규모 이상의 학술지에 100%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 7. <삭제 2014.10.29.> 8. 소정의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현행	개정(안)
제79조(심사위원의 확정 및 심사위촉) ①학위청구 논문제출자가 있는 경우에 전공(학과) 주임 교수는 학위청구논문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후보를 선정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대학원장은 (문구신설) 심사위원을 확정하여 위촉한다.	제79조(심사위원의 확정 및 심사위촉) ①학위청구 논문제출자가 있는 경우에 전공(학과) 주임 교수는 학위청구논문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후보를 선정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위원을 확정하여 위촉한다.
제102조(교내장학금) ①교내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장학금의 지급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삭제 2016.4.27.> 2. 연구장려장학금 : 본 대학원 학위과정 입학생 및 직전 학기 성적 80점 이상인 재학생(외국인 장학금 및 학·군·관협약장학금 수혜자 제외) 3. 공로장학금 : 원우회 간부 등 본 대학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 4. 우수논문장학금 :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자 중 해당 논문이 대학원위원회에서 우수논문으로 인정된 자 5. 실험실습보조원장학금 : 일반대학원 실험실 운영 학과에 재학 중인 실험 실습 보조원 중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학과당 2명 이내) 6. 직장인장학금 : 3년 이상 재직 중인 공무원이나 산업체 근무자로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교육대학원의 경우 현직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에 한함) 7. 교직원장학금 :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8. 우석가족장학금 : 10년 이상 본교 재직 후 퇴직한 교직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우석학원 법인사무국·법인 산하기관·전북일보사의 직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9. <삭제 2014.2.7.> 10. 외국인장학금 : 외국인으로 본 대학원 학위 과정에 입학한 자 및 재학 중인 자 11. 학·군·관협약장학금 : 학·군·관 제휴협약에 의해 입학한 자 및 재학 중인 자 12. 총장장학금 :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제102조(교내장학금) ①교내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장학금의 지급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삭제 2016.4.27.> 2. 연구장려장학금 : 본 대학원 학위과정 입학생 및 직전 학기 성적 80점 이상인 재학생(외국인 장학금 및 학·군·관협약장학금 수혜자 제외) 3. 공로장학금 : 원우회 간부 등 본 대학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 4. 우수논문장학금 :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자 중 해당 논문이 대학원위원회에서 우수논문으로 인정된 자 5. 실험실습보조원장학금 : 일반대학원 실험실 운영 학과에 재학 중인 실험 실습 보조원 중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학과당 2명 이내) 6. 직장인장학금 : 3년 이상 재직 중인 공무원이나 산업체 근무자 및 사업자로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교육대학원의 경우 현직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7. 교직원장학금 :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8. 우석가족장학금 : 10년 이상 본교 재직 후 퇴직한 교직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우석학원 법인사무국·법인 산하기관·전북일보사의 직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9. <삭제 2014.2.7.> 10. 외국인장학금 : 외국인으로 본 대학원 학위 과정에 입학한 자 및 재학 중인 자 11. 학·군·관협약장학금 : 학·군·관 제휴협약에 의해 입학한 자 및 재학 중인 자 12. 총장장학금 :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현행	개정(안)
어려운 자 중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선발한 자 13. 사도장학금 : 당해년도 본교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교육대학원에 입학한 자 중 출신학과 학과장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선발한 자 14. 한가족장학금 : 가족의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본 교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15. 편입학장학금 : 본 대학원 학위과정에 편입학한 자 16. 만학도장학금 : 만55세 이상 입학 및 재학자 ②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어려운 자 중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선발한 자 13. 사도장학금 : 당해년도 본교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교육대학원에 입학한 자 중 출신학과 학과장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선발한 자 14. 한가족장학금 : 가족의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본 교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15. 편입학장학금 : 본 대학원 학위과정에 편입학한 자 16. 만학도장학금 : 만55세 이상 입학 및 재학자 ②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u>부칙</u> <u>이 규정은 2024년 월일부터 시행하되, 제13조 제3항, 제4항의 경우 2024학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u>